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존경하는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전 철수 의원입니다.

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 니다.

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이 개정조례안은 기존 「주택법」의 전부개정 사항과 「공동주택관리법」의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 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 법 체계 정비에 따라 서울특별 시 주택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"소규모 공동주택의 안 전관리 지원"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 조례에 이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